



강 남 구 의 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서 제출 독려(1차)**

1. 감사담당관-2120(2016. 2. 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종료시한이 임박하여 신고할 경우 접속 지연, 정보 조회 불편 등 문제점이 예상되니, 재산등록 대상자께서는 **조기(2월 19일까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재산공개대상자는 **‘15.1.1. ~ ’15.12.31. 사이에 있었던 모든 주식 거래의 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오니 [붙임3] 자료를 참고하여 **2016. 2. 24.(수)까지 주식변동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기재산 변동신고

가.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 2015. 12. 31.

나. 신고기간 : 2016. 1. 1. ~ 2. 29.(2개월)

※ **조기입력기간 : 2016. 2. 15. ~ 2. 19.**

다.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접속하여 신고

라.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법정 신고대상 재산의 변동사항

(2) 주식거래내역 신고

가. 신고대상 주식

-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상장·비상장 주식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법 제12조제4항)는 제외

나. 신고 방법

- 주식변동사항신고서(붙임3)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

- 붙임 1.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리플렛)
2. 금융정보활용입력방법(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1부
3. 2016년 주식거래내역 신고 안내 1부. 끝.

강 남 구 의 회 의 장

수신자 김명옥 의장, 송만호 부의장, 이재민 운영위원장, 문인옥 행정재경위원장, 박남순 복지도시위원장, 오완진 의원, 양승미 의원, 이경옥 의원, 김병호 의원, 이재진 의원, 이관수 의원, 한용대 의원, 최민숙 의원, 최중현 의원, 문백한 의원, 이호귀 의원, 김광심 의원, 이인화 의원, 서경원 의원, 여선웅 의원

주무관 양만춘 의정팀장 흥남기 구의회사무국장 전결 02/16 이동호

협조자

시행 강남구의회-1755 () 접수 ()
우 06288 강남구 삼성로 154 /
전화 02-3423-8108 /전송 02-3423-8926 / general7@gangnam.go.kr / 대시민공개